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가단2777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8. 10. 29. 접수 제14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자녀로서 2018. 10. 29.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8. 10. 29. 접수 제142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9. 8.경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조세채권은 합계 47,115,61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B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소결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혜

별지